

## 간호원 파동의 저변과 당국이 취한 태도 간호협회의 중재역할을 평가한다

대한간호협회 경제 복지 위원장 이 경 식

서울대학병원과 국립의료원, 즉 우리나라의 최대규모의 國立 및 敎育病院 간호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원들의 實力行使는 메스콤을 통하여, 그 내용이나 규모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다. 메스콤을 통한 여론이나, 醫 務 護 系에 직접간접으로 관련을 가진 전문직업인들에서도 소위 一次 파업은 처우개선을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있으나, 二次파업은 일개 課長의 전보발령에 반발하기 위하여 취해진 實力行使는 나이팅게일 후예들로서, 本然의 姿勢를 망각한 용서 못할 행위라는 등, 혹은 一, 二次파업이 연결된 것으로서, 人間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배신(당국이 약속한 보복조치 않겠다든 전보발령 시행에 따른)에 대한 분노의 폭발로서 당연하다는 등 曰可曰否는 설 새없이 신문을 위시하여 총동원된 메스콤에서 깨서 특필하여 직접파업에 관여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행위에 대한 正不當性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여론의 일치성이 없었으며, 방향 감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筆者의 전례로서는, 국립의료원의 간호원파업은 소위 一, 二次로 나눌 수 없는 성격의 것인 것이, 처음파업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시간적으로는 수일간의 사이가 있었다 할지라도, 해결은 고사하고 잠정적인 파업요인을 유발시킨 병원이나 보사당국의 畧的인 責任의 所屬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保社當局에서는 課長전보발령이 오비이락격이라고 主張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行政府로서 위신을 세우기 위한 理由에 지나지 않은, 一 次 파업에 대한 보복人事조치라는 것은 메스콤을 통해서나, 의료원 內部에서의 消息通이 너무나 잘 뒷바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筆者가보는 이번 人事문제는 파업과 관련한 보복조치로서 취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보사당국의 변명과같이 보다 事前에 계획된 人事조치였다는 點에 문제의 핵심을 돌리고 싶으며, 그裏面을 파헤쳐보려 한다. 即, 단순히 파업에 관련하여, 기백명의 간호원을 대표하는 간호과장에게 행정적으로 혹은 도의적인 책임을 물었다면, 이번 문제는 그렇게까지 최악의 사태까지 진전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여타소스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보다 복잡한 내막이 이번 전보발령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위장하기 위하여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처럼 취한 소위 의료원 내부의 권력층이나, 이들의 要求(전보발령내신)를 壓力에 의해서든지 正當한 理由였다고 받아드렸든지 간에 行政府로서의 行政力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의료원 내부의 권력구조의 농간에 행정부만이 특특히 당신을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유간호과장의 제거가 오래전부터 의료원 당국을 中心으로 몇몇 의사들로부터 계획되었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급기야 의료원장의 위치마저 위협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가? 이것은 단순한 人間關係의 不調和에서 기인되었다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자료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계기로 의료원내의 모인사가 유간호과장이 “문제의 불씨”라고 메스콜을 통해서 혹은 側近者들에게 發言한것이 事實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筆者가 보전에는 “문제의 불씨” 역할을 한것임에는 틀림없다. 勿論 人間으로서 自己王國을 건설하고싶은 마음, 그리고 이것을 구축하기 위하여 權力構造를 견고하게 또 확장하고 싶은 잠재의식은 理解할 수 있는 적라라한 人間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 目的達成을 위하여 정당한 도전자를 向하여 투쟁할 것이지 自己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價値觀을 기초로 自己權力구조와 직접 관련없는 다른 한 權力구조의 파괴를 위하여 도전한다는 것은 心理學의으로 感情轉移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간호행정이 아무리 직접적으로 의사권력구조와는 관련이 없다할지라도 전통적인 의사-간호원관계에 젖어있는 의사들에게는 강한 看護行政體系가 표면적으로는 아니꼽기 짝이없이 느껴질 것이고, 잠재의식적으로는 도전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간호원에 대한 개념은 환자診療에 있어서 하나의 의사보조자로서의 역할이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생각은 어쩔 것이며 환자복지 中心에서의 現代간호개념 即 의료팀멤버를 구성하는 전문직 간호개념을 가진 간호원들의 동장은 전통적 思考方式의 所有者들에게는 위협이며, 도전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誤算은 일개과장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권력구조가 일시에 파괴되고, 전통적 의사·간호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것과 보다 진취적인 현대간호개념의 소유자들에 대한 過小評價에 있다고 본다. 數日前 부라운관을 통하여 있었던 보건의료간호계 전문가들의 과업에 관련한 토의에서 한 보건행정전문가가 지적했듯이 表面上으로 간호원과업이라는 形態로 간호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전통적인 思考方式과 現代의개념의 差異에서 일어날수 있는 必然的인 過程으로서 나타났다고는 하나 이時點에서 의사-간호원관계가 문제야기의 底邊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간호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의료원자체내의 特診費 分配比率이 兩者관계를 악화시킨 強한 理由中の 하나라고 하니 더욱 유감스럽다. 勿論 “特診費”를 文字 그대로 풀이 한다면 의사에 의한 특별진찰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은 의사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간호원의 참여없이 診療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事實에 근거를 둔다면 참여자들에 대한 공동혜택은 당연한 것이라할 수 있겠다. 先進國에서는 診療費와 간호비가 따로 부과되기 때문에 問題의 여지가 없으나 한국의 경우 그것이 명확히 區分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착각을 이르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

名實非히 專門職業이라면, 전문직 수준의 교육, 質的事業제공, 그리고 이에대응한 수가가 수반되어야 함은 두말할나위가 없으므로 간호비 부과문제도 가까운 장래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保社當局의 強硬一邊倒의 조치에 대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勿論 行政府로서 산하에 있는 職種 이 간호직뿐만 아니기 때문에 간호원과업을 온전적으로만 다루기에는 雨後竹筍처럼 일어날 수 있는 처우개선의 파동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고충을 심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원내부의 권력구조 구축에 직접관련된 人事조치를 오비이락격이라고는 하지만 삼척등자도 알수있는 보복조치의 형식을 취한 처사는 行政府로서 진상파악과 더불어 해결점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발언권이 강하다는 몇몇 의사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手段—처우개선 투쟁보다 차원이 다른 人間的인 信譽를 저버리게한 배신행위로서 간호원들을 자극하여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特히 行政府의 계속적인 強硬態度, 即 公務員法이 외거 직무유기죄 적용, 파면, 해외진출기회박탈, 면허박탈조치 云云은 너무나도 위협일변의, 본체해결방향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취했다고 본다. 만일 간협이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업무에 歸任하도록 중용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으며, 保社當局은 公務員法을 적용하여, 問題의 충식을 가져왔겠는가? 筆者는 보사당국이 내세웠던 強硬조치가 이행되었을 경우 그 實現性여부 및 여기에 대응하여 간호원들이 취할 수 있었던 몇가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行政當局으로선, 일단 파업으로 간주하고, 관계간호원 全員은 司直當局에 고발내지 파면조치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되면 正式재판에서 흑력이 가려질 때까지 간호원들은 身邊 확보 내지는 구류까지 당했을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원은 직각 파면당했을 경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무처내에 있는 소청위원회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각되면 高等法院에 가면 혹은 구류가 不當하다는 요지의 行政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의료원 간호원들이 직장을 이탈하기 前에 公務員職을 사임하겠다는 辭職狀을 개별적으로 의료원 당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公務員法에 의거하면 일단 辭表를 제출하면 개인의 意思가 존중되어 일단 受理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간호원의 勝算은 확실하며, 따라서 파면은 있을 수 없다는 點이다. 설사 파면조치를 당하고, 行政소송을 제기치않았다 하더라도 公務員으로서주어진 權限만 박탈하고, 일정기간동안 公務員職에만 복귀할 수 없는 것이지 정부기관 이외에서의 간호원으로서의 행위에는 하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女性의 立場인 간호원들은 특히 五級공무원직의 매력은 그리 強한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의 것은 해외취업의 길을 막는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民主主義를 기본으로 個人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공무원직을 물러났다고 해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限, 취업을 막을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다. 勿論 保社部로서는 必要한서류를 지연시킨다든가, 보류한다든가, 등 내부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골탕을 먹일 수는 있겠지만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적어도 해외취업을 막을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간호원면허취소 가능성은 어떠한가? 간호원파업은 공무원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이지, 면허와는 별개문제인 것이다. 면허교부는 保社部 소관이지만, 어디까지나 蠲民醫療法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지 공무원행위와는 아무관련이 없는것이다. 의료업자의 면허취소는 의료법에 의거, 그 業과 관련하여 犯罪사유가 있을때만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專門敎育을 받은 간호원들을 다루는 방법으로서는 보다 論理的이고, 理論的 근거가 뚜렷한 발언 내지 해결방안 제시가 要求된다고 보겠다.

다음은 이번에 적극 중재역할을 自選하여나선 看脇에 대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소위 一次파업때는 적극중재에 나설만한 시간적여유가 없이 일이 끝났으나 二次파업때는 파업이 수일 계속되었고, 보사당국이나 간호원들이 너무나 쟁쟁히 맞섰기 때문에 중재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나, 역시 간협으로서 兩側名分있는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여간 노력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르기 위해서 公休日이

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등본서주, 회원의 立場을 세워주고, 保社當局의 容化政策을 尊重했으며, 급기에는 회원들을 業에 귀임할 수 있게 尊重에까지 이루게 된 것이다. 保社部에서는 靑協의 仲裁역 할로 파업을 수습한데 대하여 인정하고, 파업이전에 문제해결의 열쇠인 처우개선이나 직급조정등에 대한 협회의 건의에 보다 성의있는 귀를 기울이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 이번경우와 같은 最惡의 파업사태로는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도 협회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仲裁역 할에 참여했으나 파업이 일단 종식되고 보니 여러가지 점에서 재고했어야 할것이 생각나서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그 첫째로 간호협회로서는 처음 仲裁역 할에 나섰을때 보사부나 간호원들이 너무나 강경일변이었기에 仲裁의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側인 간호원들에게만 업무에 귀임하도록 尊重하였는데 간호원의 입장을 해명하는(二次파업) 해명서 혹은 성명서로 인간지를 통하여 발표하였더라면 한다.

물론 대한 간호협회본부, 지부 이사회 및 간호원장회의 합동회의에서 해명서 발표의 가결을 보았으나(10月 5日) 해명서 작성 위원회의 流會 및 메스컴에서 이미 다분후에 시간적요소를 결국 실행을 보지 못한 것은 이사직이나 회장단의 명예직이라는 요인이 어느정도 영향을 준것만은 사실이다. 의료원 간호원들도 二次파업에 들어가기전에 보사부장관, 차관에게 제출했었다는 결의문(보부조치가 있을 경우 즉각 전원 사표제출 하겠다는 요지)을 메스컴에 발표했더라면 소위 二次파업의 名分이 있었을 것이며 사회여론도 혼선을 빚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靑協으로서도 해명서 발표같은 것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수년을 통하여 外的으로는 회원수와 관련하여 방대한 예산, 신축건물등, 內的으로는 날로 증가하여가는 업무량과 활동범위의 팽창으로 도저히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는 명예직 회장단과 이사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이들에 대한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회생이 너무크며 또한 6천회원을 위해서도 제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파업을 한 간호원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이들은 모두가 우리회의 회원으로 믿고 있으며 간호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강한간호행정 의 필요를 위하여 직접 봉기한 용기와 여론의 희생이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회원으로서의 의무들 보다 강하게 느껴주길 바란다. 회원의 의무는 회비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속한 회가 무엇을 하는지 회원들의 복지, 전문직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의 활동 상황을 자진해서 알아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조직체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회를 어떻게 도우면 되는지 등 적어도 관심표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길 빌지만 “진즉 기성급 년것이 억울하다”는 등 “간호협회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줬느냐” 등등의 발언은 조직체에 속한 전문 직업인 회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회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일을 해줘야 한다는 기대보다도 우리가 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간호원 파업과등을 둘러싸고 여론과 문제야기와 해결의 열쇠를 가졌든 의료원당국 보사부당국 그리고 仲裁역 할에 나섰든 대한간호협회를 中心으로 파업문제의 내용을 검토해왔다.

여러가지요인중에 의사—간호원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것이 문제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

실은 의학교육이나 간호교육에 어떤 차질을 의미함으로 의료요원간에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의학교육 과정에 적어도 가장 가깝게 같이 일하는 간호원의 역할을 소개해주고 간호원에 대한 전문적가치관을 선행하기 위하여 현대간호 개념을 소개시킬 수 있는것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지난 5月末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되었던 사회의학 세미나에서도 채택된 건의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다시는 실행행사로 이끌게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료원 당국은 의료원內에서 해결할 수 있는 치우개선에 관련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의사나 간호원 사이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와 간호에 임하는 모든 의료요원들은 상호 존경, 신뢰를 갖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보사당국에서는 한 기관에만 귀를 기울이는 일방적인행정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인사조치는 물론 교육과 자격에 합당한 인사 이동에 고려있길 바란다. 일생을 임상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경륜과 연구실적이 있는 분을 일조일석에 보건간호 전문가의 자리에 전보발령을 냈다는 것은 행정능률의 저하는 물론 입장에서 볼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간호협회는 이반을 계기로 회원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 운영을 연구하여야 하며 명실공히 전문직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적극적이고 직각적 반응으로서 사회 여론, 행정부의 처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명세직 회장직을 전담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

(31페이지 계속)

과거의 병상옆에만 국한되었던 소극적인 간호개념에서 탈피하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회 속에 파고 들어 건강증진, 질병예방, 장수할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병원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전문간호원은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간호교육도 변화된 간호개념에 적합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수정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새로운 간호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자격 간호원을 기르려면 적어도 成年이어야 이런 기능을 완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하여 적어도 12년의 일반교육을 이수한 학생이라야 간호교육을 3~4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보건의료원 즉 Team member로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Co-worker로서 국민보건의 역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인 욕구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보면 간호원의 봉사적인 정신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한사람의 간호원이 응분의 댓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곧장 환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자는 한사람이 늘고 간호원은 한 사람이 줄어든다는 정확한 계산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료한 현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이 뒤 따라야할 것입니다.

---

(16페이지 계속)

우리들의 지성이 시대에 앞서고, 우리들의 사명과 거룩한 Nighthingale의 공적이 송고하게 표창되어야 한다는 大義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원대한 포부를 마음 담아 작은 소녀가 白衣에 뛰어난 송고한 그 理想의 指標를 定立하자는 호소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 파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조용히 “까운”을 다시 입고 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에 어려운 것이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하얀 우리들 마음의 까운 속에 깊이 담아 두면서 떨리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충고와 위로를 보내 주신 우리들 白衣의 Human에게 알찬 내일의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